

서울중앙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19가단12952 구상금 청구의 소
원 고 A 주식회사
피 고 1. 주식회사 B
2. C
변 론 종 결 무변론
판 결 선 고 2019. 8. 2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11. 4.부터 2009. 5. 15.까지는 연 19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각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박소연

청 구 원 인

1. 본 건 보험계약자인 피고 (주)B는 소외 D [이하 피보험자라 함]과 E [] 6-10F모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그에 따른 하자보증금 지급보증으로 원고발행 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(하자)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음.

보 증 보 험 계 약 내 용

보험계약자	증권번호	피보험자	보험가입금액	보험기간	보증내용	연대보증인
(주)B	F	D	33,000,000원	2008.02.11.- 2009.02.10.	하자보증금	C

2.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본건 보험계약자인 피고 (주)B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, 피고 (주)B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,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음.
3. 피고 C는 위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(주)B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음.
4. 그 후 보험계약자인 피고 (주)B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, 피보험자는 원고발행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고, 그에 따라 원고는 2008. 11. 03. 피보험자에게 33,000,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음.
5. 한편 피고들이 위 지급보험금 33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본 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102 에 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. 06. 25.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.

